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A15BL)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문의 : 032-833-0722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견본주택 운영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 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하며, 방문접수시에는 자격인증 서류 및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안내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3번지 (A15BL)
- 공급규모 : 아파트 722세대 / 지하2층 ~ 지상26층 12개동
- 공급개요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m ²)				계약 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시기 (예정)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포함)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84A	84.9400	23.0011	107.9411	72.0530	179.9941	160	28년 5월 예정
	84B	84.9400	23.0411	107.9811	72.0530	180.0341	60	
	99A	99.6200	27.3239	126.9439	84.5058	211.4497	71	
	99B	99.9800	26.7421	126.7221	84.8112	211.5333	137	
	99C	99.7500	26.3385	126.0885	84.6162	210.7047	68	
	105A	105.3800	28.4157	133.7957	89.3919	223.1876	21	
	105B	105.7300	27.8321	133.5621	89.6888	223.2509	98	
	112	112.8900	28.6793	141.5693	95.7625	237.3318	22	
	115A	115.1100	32.8602	147.9702	97.6457	245.6159	10	
	115B	115.1100	32.8602	147.9702	97.6457	245.6159	10	
	115C	115.9800	32.1551	148.1351	98.3837	246.5188	8	
	120	120.7800	30.1750	150.9550	102.4555	253.4105	30	
	154PA	154.9000	42.5827	197.4827	131.3988	328.8815	2	
	154PB	154.9000	42.5827	197.4827	131.3988	328.8815	2	
	168PA	168.0100	45.0679	213.0779	142.5199	355.5978	1	
	168PB	168.0100	45.0679	213.0779	142.5199	355.5978	1	
	146T	146.8500	37.3568	184.2068	124.5702	308.7770	2	
	168Ta	168.9200	40.9404	209.8604	143.2918	353.1522	7	
	168Tb	168.2100	42.7658	210.9758	142.6895	353.6653	2	
	168Tc	168.4200	42.7756	211.1956	142.8677	354.0633	2	
175T	175.8900	42.9616	218.8516	149.2043	368.0559	3		
186T	186.8900	50.3868	237.2768	158.5355	395.8123	2		
215T	215.3500	58.3616	273.7116	182.6776	456.3892	3		
합계							722	

※ 상기 공급개요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전용 85㎡이하 주택건설량 10% 범위)

[단위 : 세대]

구분		84A	84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인천광역시	4(20)	1(5)	5(25)
		경기도	2(10)	1(5)	3(15)
		서울특별시	2(10)	1(5)	3(15)
		소계			11(55)
	국가유공자 등	2(10)	1(5)	3(15)	
	장기복무 제대 군인	1(5)	-	1(5)	
	10년 이상 복무 군인	1(5)	-	1(5)	
	중소기업 근로자	2(10)	1(5)	3(15)	
	해외건설 근로자	2(10)	1(5)	3(15)	
	합계	16(80)	6(30)	22(110)	

※ 괄호()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입니다.

II

공급일정 안내 [예정]

구분	일정 (예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2024년 08월 08일(목)	* 일간신문 및 당사홈페이지(www.hillstate.co.kr/lake_songdo5)
견본주택 개관(예정)	2024년 08월 09일(금)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3 ※ 견본주택 운영 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32-833-0722
특별공급 청약(예정)	2024년 08월 19일(월)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09:00~17:3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함. * 견본주택 신청 시(10:00~14:00), 자격입증 서류 지참 필수
당첨자 등·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예정)	2024년 08월 27일(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에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청약통장 가입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해외건설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합니다.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인 2024년 08월 08일(목)입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수행합니다.

-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 제3항에 의거 해당 지역인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p>○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p>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 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p> <p>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가입요건 제외)</p>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 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IV 유의사항 안내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경제자유구역,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청약 신청은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한 경우로서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08.(목) 예정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 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4년 08월 08일(목)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분양사무소 및 안내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분양문의 : 032-833-0722 홈페이지 : www.hillstate.co.kr/s/lake_songdo5

V 참고자료

위치도	건본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3

※ 건본주택 관할 및 운영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hillstate.co.kr/s/lake_songdo5
 ※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032) 833-072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